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안 미 자 의원)

의 안 번 호	23-72
------------	-------

발의년월일: 2023. 6. .

발의자: 안미자,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남해석, 오욱자, 한선미, 홍지광

1. 제정이유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마포구에서 자라나는 여성청소년들이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리용품 지원대상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다.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관계법령

-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붙임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3. 5. 18. ~ 5. 23.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약칭: 청소년복지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101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 12. 12., 2021. 4. 20.>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4. 20.>[제목개정 2017. 12.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1인별 지원 비용: 월13,000원*/인 (*여성가족부 생리용품 지원사업 지원액)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만9세~만24세)(2023. 3. 31.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대상자 (a)	제외 대상 (b)	지원 대상 (a-b)	비고
관내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	28,464	1,044	27,420	(제외 대상) 여성가족부 사업대상 인원(저소득층)

○ 여성청소년(만9세~만24세) 인구변화(2018. 12. 31. ~ 2022. 12. 31.)

구분	2018. 12.	2019. 12.	2020. 12.	2021. 12.	2022. 12.
관내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 인구(명)	30,334	30,018	29,641	29,292	28,356
변화율(%)	-	△1	△1	△1	△3

○ 매년 2% 인구 감소 가정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비용	4,277,520	4,191,970	4,108,130	4,025,968	3,945,449	20,549,037
	○ 소계(b)	4,277,520	4,191,970	4,108,130	4,025,968	3,945,449	20,549,037
□ 총 비용(a-b)		4,277,520	4,191,970	4,108,130	4,025,968	3,945,449	20,549,03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자체 수입	소계	4,277,520	4,191,970	4,108,130	4,025,968	3,945,449	20,549,037
	지방세수입	4,277,520	4,191,970	4,108,130	4,025,968	3,945,449	20,549,037
합계		4,277,520	4,191,970	4,108,130	4,025,968	3,945,449	20,549,037

5. 덧붙이는 의견

- 만9세~만24세 전체 여성청소년이 지원신청을 한다는 가정 하 추계액임
- 사업이 시행된 이후 신청률 및 사용률, 인구변화 그리고 생리용품 물가변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반영한, 보다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하종완
연락처	02-3153-8984